보도자료

2013. 3. 25.



대 법 원
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	양형위원회
담당자	운영지원단장 강동혁 (帝 3480-1924)
긎	'보관실 ® 3480-1451

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는 2013. 3. 25. 16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『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』 및 『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』에 관하여 심의ㆍ의결

①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-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
 - 권고형량 범위 상향 조정 논의배경
 -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현재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'참작 동기 살인'유형과 '보통 동기 살인'유형은 성범죄, 뇌물, 사기, 증권·금융 범죄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어 왔음
 - 또한 일선 법원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하는 상한 이탈 사례도 상당수 발견됨
 -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기존 양형실무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살인범죄 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
 - 다만, 참작동기 살인 유형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, 일응 참작동기 살인유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

♦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전·후 형량범위 비교

	수정 :	전			수 ⁷	정 후	
유형	감경	기본	가중	유형	감경	기본	기중
참작동기 살인	3년-5년	4년-6년	5년-8년	참작동기 살인	3년-5년	4년-6년	5년-8년
보통동기 살인	6년-10년	9년-13년	12년-17년	보통동기 살인	7년-12년	10년-16년	15년 이상, 무기 이상
비난동기 살인	9년-13년	12년-16년	15년 이상,	비난동기 살인	10년-16년		18년 이상,
	37 107	121 101	무기이상	미년6/1 현년	107.107	100 200	무기 이상
중대범죄결합	14년-18년	17년-22년	20년 이상,	중대범죄결합	17년-22년	20년 이상,	25년 이상;
살인	14년 10년	1/12 4412	무기이상	살인	1/12/22	무기	무기 이상
극단적 인명경시 살인	18년-23년	22년-27년	25년 이상, 무기 이상	극단적 인명경시 살인	20년-25년	23년 이상, 무기	무기 아상

○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부 수정

- 현재 <u>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'**잔혹한 범행수법**'</u> 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
- '잔혹한 범행수법'은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, 위 사유는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범행동기나 계획성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함

■ 양형기준의 명확화 및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수정

- 양형인자 중 '중한 상해'의 의미규정 수정
- 살인미수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하나인 '중한 상해'의 의미규정 중 "치료기 간이 약 4주 ~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"라는 전제 부분을 삭제함으 로써, 상해의 주수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형을 가중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

○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 추가

- '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'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에 아래와 같이 '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' 부분을 추가

■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

-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
-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

○ 살인미수범죄 서술식 기준 수정

-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양형기준에 "'무기'는 '20년 이상'으로, '무기 이 상'은 '20년 이상, 무기'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"는 단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형량범위를 명확히 정함
- 신설된 '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'의 양형기준 설정
- 개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3. 6. 19. 시행 예정) 제10조 제 1항에서 신설된 '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' 범죄를 살인범죄 제 4유형(중대범죄 결합 살인)에 포섭

②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- 기존 양형기준의 강화
 - 강도강간,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향
-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"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"이고, 성폭법위반 (특수강도강간)죄는 법정형이 "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"임에도,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[7년 10년]으로 설정되어 있고,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"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"임에도,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[6년 9년]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
-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고 범행의 흉포 성,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형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

상향조정함

- 다음과 같이 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

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주거침입 등 강간 /특수강간	3년 - 5년6월	5년 - 8년	6년 - 9년
3	강도강간	5년 - 8년 6년 - 10년	7년 - 10년 9년 - 13년	9 년 - 13년 12년 - 17년

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제추행	- 1년	6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/특수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3	특수강도강제추행	5 년 - 7년 5년 - 8년	6년 - 9년 7년 - 11년	7년 - 11년 9년 - 13년

○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

- 장애인(13세 이상)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/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, 무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하한을 일부 상향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강간치사 /강제추행치사	9년 - 12년	11년 - 14년	12년 이상, 무기 13년 이상, 무기

○ '폭행·협박이 아닌 위계·위력을 사용한 경우'의 양형인자 삭제

-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·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'폭행·협박이 아닌 위계·위력을 사용한 경우'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<u>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, 장애인,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</u>려할 때 폭행・협박이 아닌 위계・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

낮게 평가할 수 없음

- 청소년, 장애인,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 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<u>'폭행·협박이 아닌 위계·위력을 사용한 경우'를 양</u>형인자에서 모두 삭제

■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

- 2012. 12. 18. 개정된 형법,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령(2013. 6. 19. 시행예정)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<u>신설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(10페이지 이하 상세)</u>

③ 향후 일정

- 관계기관 의견조회
- 2013. 3. 26. ~ 4. 10. :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
- ※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3. 4. 22.(월) 16:00 개최 예정
 - ⇒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

│.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□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

- 권고형량 범위 상향 조정의 논의 배경
 - 살인범죄의 경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성범죄,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어 왔음
 - 그러한 지적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살인범 죄의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함
 - 다만, 참작동기 살인 유형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, 일응 참작동기 살인유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

○ '잔혹한 범행수법'을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

● '잔혹한 범행수법'은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, 위 사유는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범행동기나 계획성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함

② 양형기준의 명확화 및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수정

- 양형인자 중 '중한 상해'의 의미규정 수정
 -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어느 정도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특별가중인자인 '중한 상해'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다수의 살인

미수범죄에 있어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

● '중한 상해'의 의미규정 중 <u>"치료기간이 약 4주 ~ 5주 이상인 경우를 기</u> <u>준으로 하되"라는 전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, 상해의 주수에 의존해 기계</u> 적으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형을 가중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함

■ 중한 상해

• 치료기간이 약 4주~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,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,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○ 참작동기 살인 유형(제1유형)의 정의 부분 추가

- 현재 제1유형의 '유형의 정의' 부분의 예시로 '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'(장기간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, 자기 또는 친족이 살해 위협을 받 은 경우 등)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
- 한편, ①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, ②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도 동기에 있어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, 실무상 이를 참작동기 살인유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,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'참작동기 살인 유형'이 아닌 '보통동기 살인 유형(제2유형)'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함
- 기존의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에 아래와 같이 '비관에 의한 친쪽 살인' 부분을 추가함으로써, 실무상 '참작동기 살인 유형'과 '보통동기살인 유형'의 적용에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함

■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

○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

친족을 살해한 경우

○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

○ 살인미수범죄 서술식 기준 수정

-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기존의 서술식 양형기준은 "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/3, 상한을 2/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"고 되어 있어, 살인죄 권고영역에 "무기" 또는 "무기 이상"이 포함된 경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음
-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양형기준 단서에 <u>"단, '무기'는 '20년 이상'</u> 으로, '무기 이상'은 '20년 이상, 무기'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"는 규정을 <u>추가</u>함으로써 형량범위를 명확히 정함

○ 신설된 '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'의 양형기준 설정

- 개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3. 6. 19. 시행 예정)은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함(법정형 : 사형 또는 무기징 역)
- 한편 강간살인, 강도살인, 약취·유인 미성년자 살해 등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이 아닌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4유형(중대범죄 결합 살인)에 포함되어 있고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동일하므로, 신설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살인범죄 제4유형에 포섭함

Ⅱ.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안 주요내용

□ 기존 양형기준의 강화

- 강도강간,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향의 논의배경
 -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"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"이고, 성폭법위반(특수강도강간)죄는 법정형이 "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"임에도,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[7년 10년]으로 설정되어있고,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"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"임에도,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[6년 9년]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
 -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고 범행의 흉포성,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법정형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함

○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

● 장애인(13세 이상)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/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[13년 이상, 무기]인데 반하여, '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'는 가중영역이 [12년 이상, 무기]로 되어 있어서,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하여 1개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을 경우,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권고형량 범위가 사망하였을 때 보다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고려함

○ '폭행・협박이 아닌 위계・위력을 사용한 경우'의 양형인자 수정

-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·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'폭행·협박이 아닌 위계·위력을 사용한 경우'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, 장애인,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・협박이 아닌 위계・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음
-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<u>'폭행·협박이 아닌 위계·위력을 사용한 경</u> 우'를 양형인자에서 삭제

②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

-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(2013. 6. 19. 시행)
 - 형법 : 성년 유사강간 / 준유사강간,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신설 (각 징역 2년 이상)
 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 - (1) 13세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
 - 강간 / 준강간, 위계·위력 간음 : 5년 이상 → 무기, 5년 이상
 - 유사강간 / 준유사강간, 위계·위력 유사강간 : 3년 이상 → 5년 이상
 - 강제추행. 위계·위력 강제추행 : 1년 이상 → 2년 이상
 - (2) 13세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·치상, 강간 등 치사 규정 신설
 - 강간 등 상해·치상 : 무기, 7년 이상
 - 강간 등 치사 : 사형, 무기, 10년 이상

○ 형법상 신설된 죄의 권고형량 설정

- 성년 유사강간 / 준유사강간
 - 표 하단의 서술식 기준과 같이 권고형량 설정

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주거침입 등 강간 /특수강간	3년 - 5년6월	5년 - 8년	6년 - 9년
3	강도강간	5 년 - 8년 6년 - 10년	7년 - 10년 9년 - 13년	9년 - 13년 12년 - 17년

- 0 성년 유사강간/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,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/3로 감경
-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
 - 표 하단의 서술식 기준과 같이 권고형량 설정

13세 미만 대상 성범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강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의제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3	강제추행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4	강제유사성교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5	강간	6년 - 9년	8년 - 12년	11년 - 15년

- 0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,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/3로 감경
- 아청법상 처벌강화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수정
 - 13세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강간(변동없음)

- 청소년강간(위계·위력 간음 포함)죄는 개정 전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, 2유형에는 개정 청소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주거침입 등 강간, 특수강간(무기 또는 5년 이상) 등이 함께 포섭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형량범위를 수정하지 않 음

● 13세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유사강간(상향)

- 다만 청소년 유사강간은 기존에 성년자 대상 유사강간과의 구분 없이 '강제유사성교'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 2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, 개정법률의 상향된 법정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조정하면서 청소년강간과 같이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 2유형에 포섭

[수정 양형기준표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주거침입 등 강간 /특수강간	3년 - 5년6월	5년 - 8년	6년 - 9년
3	강도강간	5년 - 8년 6년 - 10년	7년 - 10년 9년 - 13년	9 년 - 13년 12년 - 17년

○ 청소년 강간/유사강간(위계·위력간음 포함)은 2유형에 포섭

● 13세 이상 아동・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(상향)

[현행 양형기준표]

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제추행	- 1년	6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주거침입 등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강제추행 /특수강제추행			
3	특수강도강제추행	5년 - 7년 5년 - 8년	6년 - 9년 7년 - 11년	7년 - 11년 9년 - 13년

- o 청소년 강제추행(위계·위력추행 포함)은 2유형에 포섭하되, 형량범위의 상한 과 하한을 1/2로 감경
- 수정 양형기준표 서술식 기준과 같이 형량범위 감경률을 1/2에서 2/3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형기준 상향

[수정 양형기준표]

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제추행	- 1년	6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/특수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3	특수강도강제추행	5 년 - 7년 5년 - 8년	6 년 - 9년 7년 - 11년	7년 - 11년 9년 - 13년

- 청소년 강제추행(위계·위력추행 포함)은 2유형에 포섭하되, 형량범위의 상한 과 하하을 2/31/2로 감경
- 신설된 "아동·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·치상"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 한 경우의 권고형량 설정
 - 처벌규정은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되었으나, 각 해당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음

[현행 양형기준표]

13세 이상 대상 상해/치상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제추행	2년6월 - 4년	3년 - 5년	4년 - 6년
2	일반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3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	3년6월 - 6년	5년 - 8년	7년 - 10년
4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5	주거침입 등 강제추행/특수강제추행	5년 - 8년	7년 - 11년	10년 - 14년
6	주거침입 등 강간/특수강간	6년 - 9년	8년 - 13년	12년 - 16년

-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,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
-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
-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 및 기본범죄의 내용과 법정형을 고려 하여 ①성년 유사강간, ②청소년 강제추행/위계·위력추행은 2유형에, ③청 소년 강간/위계·위력간음, ④ 청소년 유사강간은 3유형에 포섭하기로 함
 - ① 성년 유사강간(변동없음)

종전과 같이 2유형에 포섭

- ② 청소년 강제추행/위계·위력추행(상향)
 - 기존 1유형 포섭
 - 2유형에 포섭키로 의결
- ③ 청소년 강간/위계·위력간음(변동없음)
 - 기존 3유형 포섭
 - 3유형에 포섭키로 의결
- ④ 청소년 유사강간(상향)
 - 기존 2유형 포섭
 - 3유형에 포섭키로 의결

[수정 양형기준표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제추행	2년6월 - 4년	3년 - 5년	4년 - 6년
2	일반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3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	3년6월 - 6년	5년 - 8년	7년 - 10년
4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5	주거침입 등 강제추행/특수강제추행	5년 - 8년	7년 - 11년	10년 - 14년
6	주거침입 등 강간/특수강간	6년 - 9년	8년 - 13년	12년 - 16년

- 청소년 강제추행은 **1유형**에, 청소년 강간은 **3유형**에 각 포섭
- <u>청소년 강제추행/위계·위력추행,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</u>
- 청소년 강간/위계·위력간음, 청소년 유사강간은 3유형에 포섭
-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**2유형**에 포섭

Ⅲ. 향후 일정

- 관계기관 의견조회
 - 2013. 3. 26. ~ 4. 10. :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
- ※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3. 4. 22.(월) 16:00 개최 예정
 - ⇒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